

2022년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변경사항

※ 아래 도표는 1월 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며 이후 연중 발생한 변경사항은 함께 첨부된 '시행사업 세부매뉴얼 수정 및 개정사항'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업명	실시지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 검사도구)	①사전,사후검사 (연 2회) ▶ 미 취 학 아 동 : 포 테 이 지 검 사 , KISE-BAAT 총2종 ▶ 취학아동: KISE-BAAT시행 ②인지학습 ③학부모상담 및 서비스 수행내용 설명 및 욕구조사 ④월별 사례회의	①사전,사후검사 (연 2회) ▶ 미 취 학 아 동 : 포 테 이 지 검 사 (<u>필수</u>), KISE-BAAT <u>또는 NISE-B·ACT</u> ▶ 취학아동: KISE-BAAT <u>또는</u> <u>NISE-B·ACT</u> ②인지학습 ③학부모상담 및 서비스 수행내용 설명 및 욕구조사 ④월별 사례회의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중복제한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부평구),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심층검사 및 진료비 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	<u>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u> ,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부평구),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심층검사 및 진료비 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
			제공인력 자격기준 (<u>슈퍼바이저</u>)	21년도 진입 제공기관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며 대표자, 관리책임자, 제공인력과 함께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포함하여 구성해야 함(대표자나 제공인력이 아래자격을	<u>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대표자, 제공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해야 함.(외부 초빙 인정불가)</u> - 심리, 상담, 언어·놀이·미술·인지재활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p>충족하는 경우 겸직가능)</p> <p>- 심리, 상담, 언어·놀이·미술·인지재활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p>※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권고사항임.</p>	<p>전공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p>※2021년도 진입 제공기관부터 적용(1인 이상)</p> <p>※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권고사항임.</p>
3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	<u>만 19세 이상</u>
			우선순위	<p>1: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신청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3: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p>	<p>1: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신청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3: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u>임산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미만인 출산모</u></p>
			중복제한	-	<u>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u>
4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중복제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u>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상담서비스</u>

5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기준중위소득 <u>150%이하</u>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p>다음 ①,②,③,④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p> <p>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p> <p>②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p> <p>③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p> <p>④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추천공문 제출)</p> <p>*④는 우선 선정대상이며, 선정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p>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p> <p>(중략)</p> <p><u>⑤임산부(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u></p> <p><u>⑥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자</u></p>
			등급기준	단일등급	<p>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p> <p>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p>

					<p>급자가 아닌 자</p> <p>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p> <p>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50% 이하</p>
			정부지원금	144,000원	<p>1등급:144,000원</p> <p>2등급:128,000원</p> <p>3등급:112,000원</p> <p>4등급:96,000원</p>
			본인부담금	16,000원	<p>1등급:16,000원</p> <p>2등급:32,000원</p> <p>3등급:48,000원</p> <p>4등급:64,000원</p>
			서비스 형태	<p>기관방문형</p> <p>※ 거동불편자 대상 재가방문 허용, 제공기관과 동일 소재지의 경로당·복지관 추가확보시설 활용 가능</p>	<p>기관방문형</p> <p>※ 거동불편자 대상 재가방문 허용, <u>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u></p>
			제공기관 등록기준	사무실, 전용공간 구성	<u>별도 사무실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충족</u> 하는 것으로 봄(전용공간은 33㎡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함.)
6	노인수중운동교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제공기관 등록기준	<p>1.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군구(수영장 소재지 기준)에 각각 등록해야 함</p> <p>2.등록 군구 내에서 이용권을 선정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p>	<p>1.<u>등록 군구 내에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장소(수영장)이 모두 소재</u>해야 함.</p> <p>※ <u>기존 등록 제공기관 유예기간 : ~22년 12월 31일까지</u></p> <p>2.<u>인천시 노인수중운동교실 실시지역 내에서 이용권을 선정받은 이용자에</u></p>

					계 모두 서비스 제공 가능(등록 군 구 무관함.)
7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제공인력 자격기준 (기초검사 및 운동처방 제공인력)	체육학 또는 특수체육학 전공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체육학 또는 특수체육학 전공 석사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8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미추홀구	중복제한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정신건강 토달케어서비스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정신건강 토달케어서비스, 성인심리상담서비스
9	도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 서비스	강화군, 옹진군	제공기관 등록기준 (전용공간)	102.3㎡ 이상	[옹진군] 69.3㎡ 이상 [강화군] 102.3㎡ 이상
			제공인력 자격기준 (여가프로그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레크레이션지도자 자격 소지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여가활동 관련 민간 자격 소지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집단규모	○여가프로그램 1:30 이하 ○심리지원 1:10 이하 ○건강관리 1:10 이하	○여가프로그램 [옹진군] 1:20 이하 [강화군] 1:30 이하 ○심리지원 1:10 이하 (강화군 옹진군 공통) ○건강관리 1:10 이하 (강화군 옹진군 공통)